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48
----------	----

제출연월일 : 2015. 1. 12(월)
제 출 자 : 장문혁 대표의원
찬 성 자 : 이범연, 함명섭,
박종욱, 임영순,
박찬원 의원

1. 주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심사기간은 2015년 1월 19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조례안 심사
 - 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나.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마.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바.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사.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활동기간

- 2015년 1월 19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성

- 이범연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의원, 임영순 의원, 박찬원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고
2015. 01.19 (월)	제1차 조례특위 (13:30)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조례안 심사 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바.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사.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